

## 제33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1. 12. 2(금), 16:00~18:15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강명구 의장, 주동표 부의장, 조중열 의원, 윤성승 의원, 박정웅 의원, 서용훈 의원, 왕진욱 의원, 이해진 의원, 윤갑희 의원, 김승권 간사  
(13명 중 9명 참석, 이재호 의원, 박철균 의원, 박윤규 의원, 김진우 의원 불참)

의장 강명구 : 2011년 12월 2일 제33차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 13명 중 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오늘 미국에서 학회가 있어 못 오셨고, 박철균 의원, 박윤규 의원, 김진우 의원이 참석을 못하셨고 왕진욱 의원이 잠시 수업 때문에 교수님께 허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13분 중에 9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된 걸로 하고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오셔서 복잡한 안건 처리해주시니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감사원의 대학제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아주대학교 예산을 자문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의 시작은 반값 등록금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지만 그것이 교과부를 통과하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주대학교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서 했던 많은 문제제기들이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행하게도 저희는 이번에 사립대학교 감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과 대학본부는 교수회와 평의원회가 미리 예방주사를 놔준 것에 대해 표창장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나타나는 것이 4가지 정도입니다. 학생 부담을 키우는 자의적인 예산편성, 학교로 들어와야 할 재원이 다른 데로 갔는가, 교비에서 부담

< 간서명 란 >

의 장



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했는가, 여러 가지 사학법인의 재정부담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는가 등인데 저희들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여기 그대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인과 대학평의회가 양자 간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문공동체를 이룩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학에서는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것 같은 개인비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썩은 대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취약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아주대학교 평의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 오늘 심의에서는 최근에 아주대학교 학내에서 불거진 특수대학원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11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안)에 대한 자문을 하고 심의사항으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있습니다. 학칙 개정(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이 있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건이 있고,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건, 대학주차문제 현안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1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안)에 대한 보고와 자문을 하고 동시에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건을 기획처장님 오신 김에 같이 들고 그다음에 심의사항으로 들어가서 학칙 개정을 하고 나머지 개방이사 추천 건과 대학주차 건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동의하신 걸로 알고...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해 오셨을 테니까 짤막한 대학본부의 설명을 듣고 예리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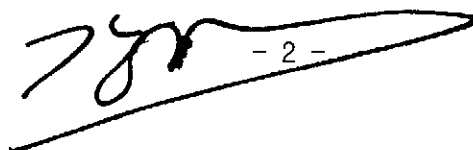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처장님, 2011학년도 2차 추경(안)하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건도 대략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이 2011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안)에 대해 보고하다.]

기획처장 김민구 : 계속해서 책임운영부서 보고를 드릴까요?

< 간서명 란 >

의 장



- 2 -

의장 강명구 : 먼저 질문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요.

기획처장 김민구 : 네 그러시죠.

의장 강명구 : 기획처장님이 개괄적으로 2011년도 2차 추경예산의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을 설명 해주셨는데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평의원 윤성승 :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출 중에서 연구와 학생 경비 합쳐서 26억 정도 줄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연구 쪽하고 학생 쪽하고 비중을 나눌 수 있나요? 어느 곳이 주된 감소요인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두겹게 드린 자료 7쪽 한번 보시죠. 다 항의 연구·학생 경비 보시면 연구비가 약 7억 정도 줄고, 학생경비가 21억 줄고, 입시관리비는 조금 늘었네요. 그래서 26억 정도가 됩니다. 7쪽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학생들도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계획이 좀 있었을텐데, 여기서처럼 해외연수 장학이라든지 수능우수장학이 감소가 되면 그 금액은 집행 안 되고 마는 겁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부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을 학비감면으로 10% 이상 주게 되어있고, 10% 중에서 30%를 가계곤란장학으로 주라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학원까지 같이 합쳐서 해라고 했습니다. 대학원은 저희가 엄청나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곤란의 Definition이 뭐냐 했더니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시작해서 1분위, 2분위, 3분위...7분위까지 줘라. 그런데 그것을 찾아줘야 합니다. 찾아서 줘야 하니까 기존의 해외장학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7분위까지 학생을 찾는 거예요. 보통 가계곤란 장학이라면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희망장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리로 돌린 겁니다. 그 숫자를 안 맞추면 아마 내년도에 패널티를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하라고 하면 예산을 짜서 할 텐데 올해 갑자기 하라니까 방법이 없어서 아주희망장학이라

< 간서명란 >

의 장



는 이름을 만들어서 주고,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장학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예산과는 조금 관계없는 사항인데, 대학 졸업생으로써 학교 측에 여쭙보고하는 발전방안을 드리고 하는 사항이 학부보다 대학원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고, 우리 발전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대학원 등록인원이 100명 감소가 되었다 하는데 10억이 안 들어왔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추세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올해만의 특수한 경우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추세가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팀에서는 그 다음 회의에서라도 발전방향에 대학원의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원장과 연구처장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기획처장이니까 물론 지표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야 대학원하고 연구처에서 만드시지만, 저도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연구도 늘리고 우리 학교가 평판도도 올라가서, 학생들을... 서울대학교도 지금 힘들거든요. 이미 서울대학교도 힘들어진 상태이고, 뭐 미국도 힘들어져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학원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단기대책과 이런 것들을 대학원장과 연구처장이 고심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액션플랜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디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피드백과 의견을 받고,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액션플랜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평의원회에서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 지금 질문하신 답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여기 평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선에서 기업체 활동하다보면 아주대 출신의 박사를 상당히 많이 만나요. 저희회사만 해도 4~5명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Quality가 사회 나와서의 기여도나 활동의 질이 썩 좋지 않다고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대학의 일반대학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대학원 인

< 간서명 란 >

의 장

 - 4 -

원이 감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의장 강명구 : 오늘의 안전과 꼭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의제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짚긴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히로시마 대학 교수가 저한테 왔어요. 좋은 학생들 있으면 자기네 대학원 보내 달라. 한 달에 200만원씩 주겠다. 그래도 안갑니다. 나와서 뭐 취직이 잘되고 어떠한 혜택이 있다는 게 확실해져야지 되는데, 아마도 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저희 대학이 재정적으로 원만하지 못해서 조금 덜 투자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비중이 더 높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대신 미국 같은데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으로 많이 가고, 자꾸 위에서 부터 채워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직접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보고해주시면 되니까요. 9페이지에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에서 임의기금 적립이 나와 있는데 임의연구기금과 임의건축기금은 많이 늘었는데 퇴직기금과 발전기금은 확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획처장 김민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은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법이 변경되어 퇴직기금은 적립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는 것은 건축기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에서는 건축기금, 연구기금 등을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연구기금은 많이 쌓을 수 있고요?

기획처장 김민구 : 예. 기금회계에서는 연구기금을 적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립할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기획처장님이 많이 만드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평의원 윤성승 :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이 있고,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게 일상적인건가요 아니면 올해가 조금 많은 건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추경 이전에 관 이내에서 항간, 목간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한 내용을 평의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부득이하게 국고사업이 늘어나거나 내부적으로

< 간서명 란 >

의 장



- 5

로 사업에 항목 간에 조정이 있어서 항 간, 목 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불가피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평의회를 거쳐서 이사회까지 보고를 해야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게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보통 매년 이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하나씩 둘씩 편의적으로 현실에 맞추기 위해 하다가 누적이 되면 문제입니다. 제가 경대원 관련 들었던 얘기 중에서도 축하화환을 보내는 걸 학생지도비에서 빼고 해서 보내는 게 관행적으로 되어왔고, 업무추진비하고 회의비를 행사비로 조정하기도 하고, 대우조교수 퇴직에 따른 퇴직금지급도 다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만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놔도 영수증 가져다 놓지 않는 한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걸 알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서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엄하게 세워서 공과 사를 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면 불가피하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계획할 때 좀 신중하게 안했던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대신 좀 이런 걸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른 의견 없으시면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넘어 가도록 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책임운영부서 운영수지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배경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 조금 창피한 얘기이지만, 학교내부에서 특정 자율 운영부서의 집행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대학평의회도 존재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안전으로 올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 250억 가량, 2009년에는 249억, 2010년에도 275억3천7백85만7천원 이렇게 되어있

< 간서명 란 >

의 장



6 -

습니다. 이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가까이 90억~100억, 교육대학원은 60억 이런 큰 규모인데,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하고 대학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 건지 비율문제도 그렇고 궁극한 것도 많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혹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느슨한 건지, 특수하다면 얼마만큼 특수한 건지, 얼마만큼 규제를 해야 인센티브가 되는 건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처장이 책임운영부서 운영수지(2008~2010)에 대해 보고하다.]

의장 강명구 : 경영대학원이 이렇다면 다른 특수대학원 독립운영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유사한 형태의 시정할 문제점이 많을 수 있거든요.

기획처장 김민구 : 사실은 저희가 특수대학원 감사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학원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기 적립되어 있던 발전기금을 건물 공간 확보 예산으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못 갚은 데도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감사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전에 대해서는 제가 교수회 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본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두 번 일이 되기 쉽습니다. 객관성의 담보를 위해 교수회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 문제에서 잘 드러났듯이 다른 견해가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집어넣어서 객관성을 담보함으로써 두 번 일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non-partisan 혹은 bi-partisan committee 구성처럼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일단 경영대 교수들은 조사위원에서 배제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배제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은 좀 제대로 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받아서 일일이 자세히 봤습니다. 뭐 얘기할 필요 없이 문제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걸 지적했다 해서 미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손가락 끝에 뭐 좀 지저분한 게 묻었다고 해도 가리키는걸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네

평의원 윤성승 :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책임 운영부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오버헤드를 떼고 나서 나머지 운영수지는 각 책임운영부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기금을 적립한 후 발전기금을 사용하게 될 때는 저희 본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평의원 윤성승 : 운영수지 남은 것은 발전기금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거의 다 들어갑니다.

평의원 윤성승 : 거의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특수대학원하고 관련된 단과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부에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예산 외에는 전부 발전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예를 들면, 다산관 화장실 고치는데 경대원 발전기금으로 부담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런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다 발전기금으로 적립합니다.

평의원 윤성승 : 업무추진비나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지난번에 학교 웹사이트에 뜬 어떤 글을 자세히 보시면 문제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도 그것 때문에 최근에 카드감사를 저희 학교가 처음 실시했습니다. 카드 쓰는 매뉴얼, 그린카드 사용하기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감사를 최근 거의 3년 치를 했습니다. 법인카드사용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이 없다보니 카드를 쓰는 가치관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세한 매뉴얼도 만들고 사례별로 다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징계나 이런 것들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안은 매뉴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의원회 같은 곳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다 보여주시면 끝납니다. 매우 불행하게도 자료를 요청하면 절대 안 보여 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종구 전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꼭 보여주십사 했더니 안보여줍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지난번 회의 때 병원에서도 출장을 누가했느냐 출장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미국하고 중국만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것은 베트남이었거든요. 모든 공적인 기관에서의 업무기록들은 문서로 남아야하거든요. 말로 끝내려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쓰신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는 안보여 드린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아니, 안보여주셨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다만 와서 보시라는 겁니다. 카피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와서 확인해서 보여 달라는 건 언제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 쪽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항상 보여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와서 보시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기획처장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하게 카드까지 다 보여 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가능한데 다만 그걸 복사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복사한다 하더라도...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장 강명구 : 그럼 저희가 가서 보고 적어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이렇더라 하고 얘기를 한다면 가능합니까? 가서 눈으로 보고 그 많은 카드전표를 어떻게 머릿속에 다 넣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니, 예를 들어서 편의를 봐드릴 수는 있죠. 그 많은 전표를 어떻게 거기서 다 보시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편의를 봐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권리가 있는 것이지 대학 본부 측에서 해줄 수 있다 없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정보공개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카피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죠. 학교가 나름대로 대외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와서 보는 것도 합법적인 공개이거든요.

< 간서명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업무추진비라든가 공적인 카드 쓴 거는 당연히 보여주고 검토 되어야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굳이 왜 강조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서울 시장에게 가서 보여 주십시오 했더니 다 보여주더라고요. 서울 시장도 보여주는데 아주대학 총장 직무대행이 어떻게 개인카드도 아닌데 그걸...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여드리겠다 했고요, 그 대신에 와서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와서 보시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장 얘기도, 서울시장은 그 당시에 그 양반이 보여 준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박종구 전 직무대행이 자기 돈, 자기 월급 가지고 쓴 겁니까 아니면 학생등록금 가지고 또는 학교교비를 가지고 학교의 법인카드를 쓴 겁니까? 저도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카드 받아서 쓰는데 저는 일일이 학생들하고 밥 먹었으면 왜 먹었는지 다 씁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회에서도 5천 원 짜리 이상 먹지 말자고 항상 얘기하고 싸인하고 먹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등록금 쓰는 돈을 왜 우리가 못 보는지 말이 안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겠다 얘기했고, 총장님도 보여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보여준다는 게 말이죠, 가서 보고 어떻게 전부다 기억을 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건 맞지만, 저희가 편의를 드린다는 것은 편의를 봐드린다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보시고 부족한 게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다 기억을 못하니, 예를 들어 공간장소를 마련해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런 건 가능하죠.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말씀은 일단 공개를 해라, 기획처장님 말씀은 공개를 하되 열람을 하겠다. 대신 카피를 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안별로 처리하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측에서는 정보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람을 통해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의견은 거의 좁혀진 것 같고, 다만 학교 측 입장에서는 공식적 유인물로는 그게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사안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 10 -

의장 강명구 : 그렇긴 한데 제가 자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관행상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소통이고, 소통의 근거는 공개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공개의 뜻이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대학이라는 곳이 준 공공조직으로 가장 깨끗해야 할 공공조직입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와서 항상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이 안 되도록 카피를 하거나 저희가 노트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지금까지 추경예산과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건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평의원 박정용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운영부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자율권 주어져 있잖아요. 각 단과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운영수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는 대학원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발전기금으로 축적된다고 했잖아요. 발전기금의 축적은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일단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종합관 두 개 층을 사용하게 해주고, 사용 권한을 주고 하셨다는데, 예를 들어 다산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새로운 단과대학 건물을 신축해서 그쪽으로 그 비용을 활용하고, 다른 단과대학 같은 경우도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공간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는게 있다면 그런 단과대학으로 이양을 해주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써 권한은 본부에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그쪽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설득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학부 장학금에 대한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겠죠. 대부분 관련 단과대학에 도움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전기금이라는 항목이 교과부에서는 불분명하다고 해서, 이게 건축기금이냐 장학기금이냐 장기적으로 좀 분명히 하자고

< 간서명 란 >

의 장



기금에 대한 활용계획을 내주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으로 쓸 건지 건축기금으로 쓸 건지를 정해서 불분명한 기타기금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 교과부의 뜻이고 저희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목표가 명확한 기금으로 정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타기금으로 가급적 적립하지 말고 명확한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발전기금은 기타기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강명구 : 특수대학원의 발전기금 활용은 요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복지문제와 그 맥락이 유사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느냐 아니면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더 하느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인센티브가 보장되고 자발성이 보장되니 좋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못됩니다. 특수대학원의 발전기금 적립도 다 학문공동체로서 아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좀 더 많은 오버헤드를 출연하여 대학이 잘되고 그래서 특수대학원 명성도 같이 올라가서 다 같이 잘 쓸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또 한편으로는 항상 양날의 칼 같은 건데요, Merit가 없으면 안한다는 거죠. “우린 왜 해”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 서로 잘 협의해서 이익을 Maximize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만, 저도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이 크긴 한데, 또 자금을 극대화하려면 그걸 잘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럴 적에 기준은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윤성승 : 표에 관해 두 가지 여쭙게 있는데요. 매년 항목 중에 인건비 등 조정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출합계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지출이신가요? 순수 인건비 들어간 것은 따로 빠신 건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인건비 등 조정사항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2008년도가 2억7천5백인데요, 그 당시 전임교원과 정규직원의 인건비를 먼저 본부에서 인건비를 1년 치 집행하고 결산 때 인건비를 회수합니다. 전임교원의 인건비, 그리고 교대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평균인건비를 회수하는 것이지요. 조교나 계약직의 경우는 교대원 지출항목

< 간서명 란 >

의 장



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임 교직원의 인건비만 지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수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회수가 아니라 플러스 된 것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거죠?

예산팀장 조정숙 : 아니요, 본부가 먼저 집행한 것을 교육대학원의 운영 차액에서 본부가 회수합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순수 오버헤드를 빼고 인건비 등 조정사항을 뺀 나머지가 운영수지가 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2008~2009년에는 운영수지가 마이너스가 된 책임운영부서가 없는데, 2010년에는 어학교육원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통상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산팀장 조정숙 : 최초로 어학교육원이 작년 구조에서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저희가 오버헤드 기준을 바꾸기도 했고, 운영 수익성도 열악해졌습니다. 마이너스가 나면 어학교육원에서 다년간 적립되어있는 기금이 1억원 가량 있는데 그 기금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평생교육원이나 어학교육원이 책임운영부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수입을 많이 못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의장 강명구 : 평생교육원은 좀 수익을 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타 전공 교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은 야간에 강의가 있어 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담을 대학 구성원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획처장님 이걸로 끝이시죠?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오랜만에 와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종종 오겠습니다. 특히 평의원회에서 중요한 것이 발전인데 그런 것들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처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안전으로 2023플랜을 집어넣자 하셨는데 시간 제약 상 다음번으로 미루겠습니다. 대학 평의원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비하여 지원이나 대접에 문제 많습니다. 예산은 물론이고 인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대학 평의원회가 대학 조직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교수회는 전화번호부에서 한 구석에 있어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소비조합 다음 한참 지나서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가 조직으로 치자면 국회에 해당되는 건데 참으로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우리가 직제 규정 바꾸면서 그 표를 바꿨는데...

의장 강명구 : 실제로 인정하셔서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기획처장님 나가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평의원회가 3년째 되었나요? 아까 저희 의장님께서 명확한 Definition을 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해요 또 그만큼 김민구 기획처장님께서 평의원회에 대해서 상대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김민구 처장께서 저희 쪽 내용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고, 어떤 때는 재단입장에서 어떤 때는 학교입장에서 중간 조정 역할이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점점 평의원회가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학교 측에서나 평의원회 측에서 서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중열 교수님과 오래 봐왔는데 상당히 기분 좋고, 어떤 경우든지 점진적 발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기획처장님께도 고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너무 잘해서 알밋기도 하고 그래요. 기획처장님께 박수나 쳐드립니다.

의장 강명구 : 저는 본부와 항상 건강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감사합니다.

(기획처장 퇴장)

의장 강명구 : 학칙은 나중에 하고 총무처장님 먼저 오세요.

(총무처장 입장)

총무처장 이준섭 : 안녕하세요?

의장 강명구 :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준섭 처장님은 안 오셔도 되는데 제가 학교 주차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리 아시고 완벽하게 컬러 프린트해서 오셨습니다. 조금 아까 특수대학원 얘기하면서 밤중에도 그렇고 주차가 문제가 많습니다. 처장님 모교인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참 좋아요. 학교 안에는 차 한 대 없고 운동장 밑으로 한 3층 정도 파서 만든 주차시설이

< 간서명 란 >

의 장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차시설 만들고 그 위에 잔디구장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 .자 그럼 간략하게만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처장이 2012 아주대학교 교내 주차운영 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하다.]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회 안전이 맞나요?

의장 강명구 : 제가 개인적으로 올린 겁니다. 평의원회는 안전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산과 관계된 것 말고 평의원회 설치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도서관하고 성호관 사이에 나무와 잔디가 있습니다. 그 곳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 원천관에서 율곡관으로 오는 길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차선정도 가운데를 뚫어서 길을 만들고...

총무처장 이준섭 : 원천관에서 율곡관으로 오는 길 말씀입니까?

평의원 조중열 : 도서관과 성호관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가운데에 차도를 만들고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지금보다는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요? 지금 그 곳이 뭐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그 곳은 사실상 새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핵심 코어 지역입니다. 현재는 팔달관에서 도서관 쪽으로 나오는 길이 학생 유동지역인데 앞으로 저쪽에 도청에 지하철이 뚫리고 하면 그 쪽으로 훨씬 이동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이동 코어 지역이 변경이 될 것으로 마스터플랜에 되어 있는데 그 곳은 공원이어서...

평의원 조중열 : 학교가 제일 복잡한 곳인데 굳이 거기 공원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럼 땅을 더 사시면 되지요. 누가 봐도 사야 될 땅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 내용이... 총무처장님 (안)인가요?

총무처장 이준섭 : 네 맞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지금 저희 총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요일별로 차량 출입, 주차대수가 나오고 그

< 간서명 란 >

의 장



에 따라 얼마만큼 모자라고 그에 따라 어떻게 개선계획이 있다 하는 통제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통제치나 이런 것 보다는 통제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고 통제방안이 있으면 한 쪽에서는 이러한 주차면의 개선계획이 있다 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계획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통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모자란 것인지... 저희 대학이 방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학기 중에만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없이 통제방안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차면수를 조금 넓히고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전체의 레이아웃과 차량의 통제치, 주차분석의 통제치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명확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처장님께 죄송하게도 처장님 (안)이시냐고 여쭙본 것이 처장님과 직원들 사이에 (안)이 나왔으면 여러 가지의 (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보편타당성이 있고 최적 (안)이 상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강명구 : 전문가의 의견 참조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의원 윤갑희 : 학부생의 정기간 폐지가 있는데 학부생은 정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사실상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간을 발급해서 남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인식시스템,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예전 제 유학 경험인데 제일 무서운 것이 주차위반 딱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졸업도 안 시켜 줍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 대신 규칙이 정확합니다.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가장 우선권이 되겠느냐의 기준이 정해져야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부자유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줍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줍니다. 학생들은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실제로 걸어오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럴 바엔 차라리 차 안타고 다닌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 규정 체계 안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 간서명란 >

의 장





때 규칙 위반 시 범칙금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법규정에 있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기본 준칙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을 공부하셨으니 잘 만들어서 교무회의 통과해서 저희에게 오시면 저희들이 첨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도 전문가를 쓰는 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과 인력을 써서 완벽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실제로 이런 법 규정이 없으니까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법인의 상임이사 건입니다. 저희가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권위를 인정해서 총장님과 이사장님의 주차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상임이사 주차 자리는 한 번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 . . 그런데도 상임이사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아침마다 상임이사 자리를 지키시는 경비원분이 저 때문에 아주 난감해 합니다. 일관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리면 마련해야지요. 다만 법 규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시면 저희는 아무 말도 안합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평의원 이해진 : 주차 운영개선계획의 첫 번째 목적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주차관리입니다. 굳이 세 번째를 얘기하자면 조중열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차운영시스템 변경, Tag 대신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여러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시행을 했던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도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학생들 얘기도 있고, 방문객들의 평도 있고, 우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평의원 윤갑희 : 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제가 학부생이 정기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고 여쭙본 이유가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 주차요금을 올렸을 때 엄청난 불멘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주차 억제 방안에서 주된 것이 학생주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표현이나 용어도 순화해서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자극을 줄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이 외부행사나 방학 중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된 것이 학생들 주차요금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억제방안을 놓는 것보다는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질문들을 하니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해서 2번 이상 위반 시 못 들어오겠다고 하셨는데 총무처장님이 지시하셔서 주차위반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 단속하는 사람들에게도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을 때는 떼고 안하고 싶을 때는 안 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울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고 있으니까 단속하는 주차위원이 여기에 주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주차하고 주차위원이 주차하는 것 까지 도와줘서 주차했는데 저녁에 나올 때 보니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그 사람은 썩었는데 그 다음 사람은 그곳에 딱지를 댄 것입니다. 주차위반 단속도 좋지만 원칙 없이 무리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 주차위반 단속원끼리도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교내에서 주차단속을 한 경험이 없다보니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이번 12월 1일부터 주차관리요원을 충원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장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내에 차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쾌적한 캠퍼스를 구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주차구역이 아닌데 주차를 하는 차들이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

< 간서명 란 >

의 장

 18 -

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9시 30분 이후에 서울에서 일을 보고 출근을 하면 종합관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산관 뒤편 임시 주차장으로 갑니다. 다산관이나 팔달관 주차장도 항상 비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팔달관까지 갑니다. 저는 연구실은 종합관인데 없으면 거기까지 갑니다.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는데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저희가 가차 없이 주차단속을 할 것이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할 것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두 곳이 항상 비어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서 두 곳이 항상 비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면서 이런 곳에는 세우지 말고 여기 비었다고 홍보를 하시면서 하면 괜찮은데 학교를 몇 바퀴 돌다가 안 되면 계속 돌 수 없는 환경에서 가까운 곳에 세울 수밖에 없는데 토탈공지를 해서 이런 곳은 비어있으니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평의원 왕진욱 : 저도 여쭙볼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나중에 크게 신설이 된다면 신설되기 전까지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지금 주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하면 병원 쪽에 상시 상주하는 인구가 3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직원들은 여기 주차장이 없어서 월드컵경기장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가 몇 면이고 몇 대가 부족한지를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넘어오는 유동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은 병원의 주차장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주차장을 신설을 합니다. 체육관 옆의 낮은 구역에 임시 주차장을 한 200대 규모로 건설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병원과 의대건물사이의 공간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학교는 플랜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장 지하를 파서 큰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한 (안)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근 10년 내 현실적인 다른 (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왕진욱 : 근시일 내에 이 (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페이지 교내 장기주차 억제방안을 보시면 장기 학생주차를 막기 위해 학부모 주차하는 것을 인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받으려고 아침 8시 30분에 학교를 오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7시 30분에서 9시 정도에 수업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수업을 받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12시간을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수업을 받으러 왔다는 것만으로 2천원을 더 내야 된다면 과연 어떤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4시간 3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넘어가는 순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4시간이 딱 채워지는 시점에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이것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9시에 수업이 시작이 되면 6시까지가 총 9시간, 7시까지가 10시간이 됩니다. 10시간이 넘으면 2천원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듯 싶어서, 이것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12시간까지는 천원을 유지를 하고 1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 이와 같은 (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학생 장기 주차를 막는 것이 목적이려면 학생들 수업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Maximum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이 넘으면 3천원이 아니라 2만원 3만원을 낸다든지, 확 올려서 1박2일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하루 안에 주차하는 것은 천원으로 똑같이 하고 1박2일을 넘어가는 것을 대폭인상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병원도 말씀하셨는데 병원요금과 우리 요금 간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병원으로 오지 않고 학교에 주차를 하고 병원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시스템을 학교 교직원, 학생, 일반인을 구분을 하여서 일반인의 요금을 차별화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네,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네, 끝이 없어서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반적인 프레임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디테일을 잡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범규를 정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예외 조항 같은 것은 당연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 그럼, 감사합니다.

(총무처장 퇴장)

의장 강명구 : 다 끝나고 2건이 남았습니다. 심의사항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입니다.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고수는 뭐냐면 두꺼운 것을 짧게 요약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5분정도 핵심사항만 짚어주십시오.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보고하다.]

의장 강명구 : 자, 질문들 해주시죠. 웬만하면 회의는 시작해서 두 시간 넘지 않아야 좋으니 핵심만 짚어서 질문해 주시죠.

평의원 윤성승 :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칙 2조의 법과대학 존치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 증거로 70페이지 표들이 표가 근거가 된 겁니까? 법령상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간사 김승권 : 그런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나름 수요조사를 해보니 2012년까지 보다 2017년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서 법학대학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수요조사를 해서 한거죠?

간사 김승권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70페이지 표 하단에 당구장 표시 참고 보시면 졸업예정자 예측은 최근 3년도의 졸업률을 평균하여 계산한거다라고 되어있는데, 과거에는 입학생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3년을 한거면 2008년도부터 하신건지 2009년도부터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왔다가 군대도 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은 입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졸업률을 계산한다면 이 전제가 틀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전제로 계산을 해서

< 간서명 란 >

의 장



2017년까지 숫자를 그냥 만든 것인데, 왜 이것을 체크도 안했는지. 만약 법령상 요구가 되었다면 2017년이 의미가 있겠지만, 졸업률이 완전히 다들 텐데... 이런 전제가 틀린 장표를 믿고서 교무에서 학칙을 개정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상당히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졸업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군대 다 갔다 온 사람을 모집단위로 했으면 당연히 줄어들어야하는데 지금...

간사 김승권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감사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등록금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학부모 의원은 현재 학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간사 김승권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현행 학부모에 대한 것인데 총동문회에서 추천을 해요?

의장 강명구 : 아래 나와있습니다. 총동문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 3인을 11명 중에 3분을 동문회 추천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살펴 보았거든요.

평의원 이해진 : 총동문회에도 자료를 주셔야 겠네요.

간사 김승권 : 그것은 동문회와 얘기가 된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아 그래요? 자료를 저 쪽에 주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학사운영에 관해서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이 15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교수 책임시수 문제라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전원에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의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헌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공법분야에서 법전원 말고 본교의 교양과목이나 행정학과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평의원 윤성승 : 참고로 말씀 드리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조건에 한 학기에 6학점 이상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표시를 하는 대신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한 학기에 6학점초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그러면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평의원 윤성승 : 초과를 하게 되면 재인가 받을 때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대학 일반대학원하고 학부 강의는 한 학점을 더 할 수 있게, 3학점을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공이나 대학에서는 6학점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참 안타까워요. 교양과목을 강화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이 모자라고 전공 교수들 빼 갈 수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대가 상당히 수월한 면이 있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지금 제 생각에는 법학 학부가 존치되는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책임시수가 선택과목 하시는 분들은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양이나 다른 곳에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치하는 기간하고 연계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팀장님 존치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사 김승권 :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왕진욱 :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간사 김승권 : 네, 말씀하십시오.

평의원 왕진욱 : 35페이지 보시면 개정 제11조에 자료요청권 명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안에 당연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이 권리가 인정된다는 말씀이죠?

간사 김승권 : 이것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한분 한분이 요청하시면 의장 되시는 분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시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왕진욱 : 위원회의 사람들이 의견 모아서 자료 요청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대표자가 이것은 요청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교직원 4분께서 반대를 하시고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시고 학생 4명이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4대4이므로 이쪽에서 반대를 해서 의결이 안되어서 자료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막아버리신다면 학생 측에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들어

< 간서명 란 >

의 장



가게 되면 교수님들은 여러 가지 알고 들어오시니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은 등록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작정 내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등록금이 적합하다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학생 측에서는 내려야 한다고 하고 학교 측에서는 내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전혀 맞출 수 없는 입장이 얘기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자료가 공개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보면 예산집행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자료요청 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최고의 패입니다. 이 권리만으로 어떠한 무엇이든 간에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한명 한명에게 인정이 된다면 그러한 불합리가 일어났을 때 역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학교장은 그 요청을 받아서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어 보는 것 입니다.

간사 김승권 : 여기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봐서는 위원회에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성원 11명을 50%를 못 넘게 하고 3/10을 하고 그런 제도장치를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집단이나 학생 측에서 제기했을 때 다수로 막는 경우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법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동창회에서 주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질문하신 것은 개정내용 4페이지에 보시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자료요청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데 7항에 보시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출석했다고 전제하면 6분이 찬성을 해야만 자료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동창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겠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계십니다.

평의원 이해진 : 네 전달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6시까지 10분 남았는데요. 6시까지 하면 딱 중간입니다. 등  
록금심의위원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드릴 바와 마찬가지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건으로 사립학교법을 자세히 봤는데 참 복잡합니다. 결  
보기와 다르게 왜 3/10이상으로 되도록 했는지. 4:4:2:1이 무슨 뜻인지 이  
것은 교과부에서 정해준 것이고 학교에서 정한 것이 아니니 상당히 신빙성  
이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칙 개정(안)은 이의 없는 걸로 하고 통과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개방이사 추  
천 건은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아까 학칙 개정(안) 법과대학 건은 자료만 받는 걸로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의장 강명구 : 일단 자료를 받아보시고...

평의원 윤성승 :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일단 자료를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문제제기를 하고  
교무회의에서 새롭게 논의하도록 합시다.

평의원 윤성승 : 표를 보니까 2009년부터 졸업하는 숫자가 비슷하다고 생  
각하셔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졸업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누차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러 변수 넣어서 예상 시뮬레이션  
하시면 아마 1년 정도나 잘하면 2년 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 다 통과  
하고 심의사항 통과시켰고 자문 다 했습니다. 이제 논의 사항 중에 하나 남  
았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관련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  
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꼭 말씀드려야할 사항은 교과부가 권고한 권고(안)  
입니다. 한 대학 법인 하에 교육기관이 두 개가 있을 때 협의해서 추천비율  
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주자동차대학의 평의원회 의원장님을 모시고 두 시  
간에 걸쳐 회의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주대  
학교 법인 정관에는 2:2:1로 되어있는데 왜 그런지 아무 근거가 없이 법인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정관에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제제기 할 것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아주대학교 교수가 611명입니다. 아주자동차대학은  
30명 좀 넘습니다. 비율이 17:1이 넘습니다. 추천비율은 2:1입니다. 너무

< 간서명란 >

의 장



- 25 -

편차가 심하다 해서 우리가 변경을 제의하였는데 그 쪽 답변이 공감가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한 번 더 그 쪽 의견을 수렴해서 내일까지 답변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대학평의회 추천 말고 나머지 추천위원회 구성 1/2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2인을 추천하는데 그 분들이 추천위원회에 오셔서 추천도 하고 투표도 합니다. 그래서 이배수 뽑아 놓으면 또 다시 그 중에서 일배수를 뽑는데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어떠한 시뮬레이션과 방법을 택하더라도 평의회에서 사립학교법 정신에 걸맞는 역할을 할 인사를 모시기 힘듭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얘기할 것은 3분이 될지 2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추천위원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창회장님을 만나 뵙고 아주대학교가 35년이 되었기 때문에 동창회에서도 한분이 이사로 들어와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진 의원님?

평의원 이해진 :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동창회장님께 어떻게 말씀 드렸나하면, 어떻게 하면 아주대학이 좋은 대학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재단과 어떻게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지요. 저를 믿고 지켜봐주시면 그에 상응하여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하니깐 대체로 호의적이셨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개방이사라는 것이 처음 이 분들이 임용된 분들이고 이 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우리가 평의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권한은 없지만 운영의 세부사항을 시정하라는 공고는 낼 수 있는 거죠?

의장 강명구 : 당연히 있죠.

평의원 조중열 : 개방이사라는 기본 취지가 개방이사라는 말이 무엇이나 하면 그전에는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폐쇄된 이사들이라는 말입니다. 폐쇄되지 않은 개방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지금까지 3분은 재단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학교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대변하는 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3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주대 구성원 중에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개방이사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

< 간서명란 >

의장



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평의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개방이사  
현행 제도가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에 전에는 재단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2배수를 올리면 그  
분은 이사회에 들어가서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  
니다. 예를 들어서 평의회에서 추천위원회에는 재단이사는 들어오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이것을 평의회에서 권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이 세분이 유임되는 것은 의견을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장 강명구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권한은  
추천위원회에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럼 일단은 개방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천위원  
회에는 재단 이사는 들어오지 않기를 권고한다. 이 내용을 평의회에서 의  
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의장 강명구 : 저는 찬성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저도 개방이사라는 것이 회사로 치면 사외이사인데 독립성  
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해서 객관적인 좋은 의견을 내라  
는 취지로 하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럼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는 누가 추천합니까?

평의원 윤성승 : 상장회사 중에서 큰 회사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만들도  
록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 위원회에 기존 이사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평의원 윤성승 : 그 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우리와 다릅니다.

평의원 윤성승 :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결  
국 독립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가 선출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단 측 인  
사가 가급적이면 추천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가급적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확립해가는 과정이니까 평  
의회의 의견 제출을 하자는 것 입니다.

의장 강명구 : 권고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반대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만장일치 된 것으로 하고 문안을 작성해주십시오. 윤 교수님

평의원 윤성승 : 조교수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저는 앞부분에 목적을 밝히고

< 간서명란 >

의 장



뒷부분만 배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개방이사 추천의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재단이사가 들어가는 것은 재단이사는 이사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사회 의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 재단이사는 들어오지 않도록 권고바랍니다. 재단 측 추천 위원을 배제시켜달라.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의 기본정신 개방이사에 어긋난다.

평의원 조중열 :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볼 때 그쪽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에 중앙일간지에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서 바람에 타협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나 감사원에 한 번 더 문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 법의 취지에 맞나 안맞나를 당연히 물어볼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평의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할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우리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죠?

평의원 조중열 : 이사회를 제외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사회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재단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의원 조중열 : 재단이사회를 제외한... 지금까지는 결국은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의를 하는데 그럼 아주 대학교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파워가 잘못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하자는 것이 개방이사의 취지이죠. 재단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사를 그렇게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조중열 의원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원래 입법취지가 재단과 학교 구성원간의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이룩하라

< 간서명 란 >

의 장



28

고 전체 감시하라고 하는 것인데 본인을 지킬 사람을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뽑고 이것이 법의 취지와 100% 어긋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되어 왔습니다. 법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도저히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혹시 조교수님 다른 학교 재단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그런 선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평의원 조중열 : 다른 학교는 모르고 법 조문만을 읽어보고 그것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대학교에는 개방이사제도가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보다 더 잘못하는 대학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학교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비슷한 생각으로 등록금 위원회도 재단이 안 들어가고 교직원, 학생, 재단에 권한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추천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같은 표현의 내용이라도 우리의 (안)이 통과될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이 되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데 조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워낙 이것이니까 이렇게 가자 보다는 대세가 이런 내용이다 라는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평의원회 결의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윤갑희 : 82쪽 정관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못박아놓지 않았습니까?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학에서 2분 전문대학에서 1분 법인에서 2분 이렇게 5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5분이 합의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처음 구상했을 때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에 맞춰서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 생각을 걸으로는 갖게 됩니다.

평의원 조중열 : 법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서 합의라든지 투표를 하셨을 때 3:2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법인 쪽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정관인데 그것을 여기서도 법인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을 추천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쪽에

< 간서명란 >

의 장

  
-29-

서도 충분히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할 말이 물론 있겠죠.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 법인 하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는 1/2선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것은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명으로 해서 2:2:1로 해놓은 것인데 지금 윤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은 굉장히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위원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뭘 하더라도 못 바꿉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힘듭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뭘 하더라도 못 바꿉니다. 힘듭니다.

평의원 윤성승 : 이것이 취지가 일반이사를 뽑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이사가 사내이사처럼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에 해당되는 법인 측 사람들이 임명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개방이사 취지에는 사실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일반이사를 뽑는 것이라면 누가 들어와도 괜찮지만 개방이사를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의원 조중열 : 개방이사법이 만들어진 것은 사립학교의 재단이사회와 이사회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몇 분의 일까지는 재단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넣도록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게 여기 법인에서 추천하는 조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 시행한다고 하면 고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개방이사를 뽑아올 때 그때의 과정과 그렇게 해서 개방이사로 뽑힌 사람들이 과연 개방적인가 그것은 우리가 운영해본 사람들이 알텐데...

평의원 주동표 : 재단에서 이사 분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추천 하고 개방이사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추천된 후보 중에서 선정을 하시고 두 번 투표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주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개념과 관념적인 면에서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회 구성원을 비례로 뽑아서 거기서 통과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면에서 볼 때는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간서명란 >

의장



그리고 법원에서 추천을 한 것이 꼭 법인의 편에일지언정 법인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내에서 추천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차상으로 보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3:2인데 여기서 통과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그것은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논의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이사에서 개방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개방이사에 재단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감시할 사람을 자기가 추천하고 투표해서 두 배수 뽑아서 거기서 다시 또 권한을 행사한다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방에 포커스를 맞추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3:2가 되는 것입니다. 3: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법의 취지입니다. 재단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사장님께서 일리가 있다하면 통과 시켜주실 것입니다. 99%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평의원 이해진 :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자동차대학과 아주대학과의 교수님들의 인원비례가 문제가 있었고 한 쪽으로는 아주자동차대학은 군대로 얘기하자면 단위부대입니다. 그래서 한 표의 표결권을 드리는 건데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의장님께서 아주자동차대학 평의원회 의장님과 협의를 마치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께 그 내용을 말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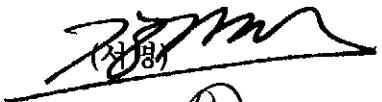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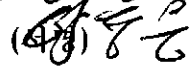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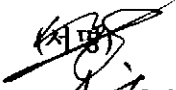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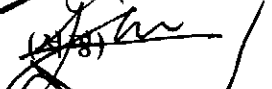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제가 부탁드린 것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저희가 또 다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의장단에게 맡겨 달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신 사안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 해주십시오. 그러면 동의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시간 15분 걸려서 다 끝났는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2011년 12월 2일

의 장	강명구	 (서명)
부의장	주동표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조중열	(서명) 
평의원	박정웅	(서명) 
평의원	박철균	(서명)
평의원	서용훈	(서명) 
평의원	왕진욱	(서명) 
평의원	이해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기 록	김승권	(서명)